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6. 12. 26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13일

·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2회 정기회

· 제9차 내무위원회(1996. 12. 26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방본부장 이용태)

가. 제안이유

- 전국 경향각지의 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등 신종업소의 증가에 따라 이들 업소에서 대·소화재가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
-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화재발생 요인이 많으며 화재발생시 대형화 요인이 많은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격감시키고자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종전에 호텔, 시장, 백화점, 유흥음식점, 지하의 위생接客업, 지하의 식품接客업, 소극장,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하던 이동식 난로 금지 업소를 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까지 확대하는 것임.
- 벌칙 :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43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창 환)

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다중 이용시설 신종업소에서 대·소화재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격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현재 액체 또는 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업소를 다중이용 시설물인 호텔, 시장, 백화점, 상가, 유흥음식점, 지하의 위생接客업 및 식품接客업, 소극장, 노래연습장 외에 " 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" 까지 확대 실시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 조례안은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업소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 (참석인원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